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
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, 상위법인 「외국인 근로자의
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
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
□ 다만,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, 되려
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
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, 정
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.

- 특히, 외국인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되어 있는바,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환경 및 복지 증진 등 근로조건 개선,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이에 안 제7조의 경우, 외국인노동자의 노동, 인권 보호 등 지원 사업을 △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, △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